

#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에 대한 소고<sup>\*</sup>

이상준<sup>\*\*</sup>

## 차례

- I. 서론
- II. PIC 및 MAT와 관련된 문서에 대해 나고야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
- III. 타 법률의 PIC와 유사한 제도의 신고 서식
- IV. 접근 신고 관련 문서의 종류 및 그 서식의 주요 항목 제안
- V. 향후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 시 고려 사항
- VI. 결론

## [국문초록]

2014년 10월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이용을 목적으로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는 경우 사전통보승인(PIC)의 획득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상호합의조건(MAT)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6년 6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률안에 따르면, 접근에 필요한 PIC 제도를 신고제를 통해 이행하고자 하고 있으나, 접근 신고 관련 세부규정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IC 및 MAT와 관련된 문서에 대해 나고야의정서가 규정하는 사항과 타 법률의 PIC와 유사한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의 양식을 분석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관련 문서를 접근 및 이익 공유 신고서, 접근 및 이익 공유 계획서, 신고필증으로 구분하고, 각 문서의 주요 기재 항목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하위법령 제정 등 나고야의정서 이행 제도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하였다.

\* 본 논문은 정부(환경부)의 재원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NIBR201625105),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대응팀 환경연구사(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학박사).

## I . 서론

2014년 10월 12일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sup>1)</sup>는 생물다양성협약<sup>2)</sup>의 세 가지 목적 중 하나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의 달성을 통해 생물다양성협약의 나머지 목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3)</sup>.

나고야의정서는 이용을 목적으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의 국내 입법 또는 규제 요건에 따른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이하 PIC)의 획득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하기 위한 계약, 즉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이하 MAT)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는 당사국에게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이하 ABS)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국가연락기관, PIC를 부여하는 국가책임기관, 유전자원의 이용을 감시하는 국가점검기관의 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고야의정서 제14조는 각 국가의 입법·행정·정책적 조치 등 ABS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공유체계(ABS Clearing-House, 이하

<sup>1)</sup>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Oct. 29, 2010.

<sup>2)</sup>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May 22, 1992.

<sup>3)</sup> 나고야의정서 제1조 (목적).

Article 1.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Protocol is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including by appropriat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y appropriate transfer of relevant technologies, taking into account all rights over those resources and to technologies, and by appropriate funding, thereby contributing to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이 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및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러한 자원 및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적절한 재원조달을 통하여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고, 그럼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CH)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1월 27일을 기준으로 EU를 포함한 82개 국가가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으로<sup>4)</sup>, 각 국가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환경부)는 2016년 6월 15일,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법률(안)이 2016년 11월 21일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하였으며<sup>5)</sup>,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sup>6)</sup>.

법률안 제11조는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그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MAT의 체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들은 국가책임기관의 장<sup>7)</sup>에게 신고하도록 하여<sup>8)</sup> 신고제를 통해 나고야의정서에서 요구하는 PIC 제도를 이행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접근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서 등 접근 신고와 관련된 문서 및 그 서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sup>9)</sup>. 특히, 당사국들은 PIC를 부여하였고 MAT가 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해야 하며<sup>10)</sup>, 이러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

- 
- 4) 국가별 나고야의정서 비준 상황은 <https://www.cbd.int/abs/nagoya-protocol/signatories/default.shtml> 참조. (최종 검색일 2016년 11월 27일)
  - 5) 법률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참조. 한편, 동 법률안은 제19 대 국회 당시, 국회에 제출(2014년 10월)되어 소관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2015년 11월)되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현 법률안은 제19 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에서 극히 일부 조항에 수정이 가해졌다.
  - 6) 2016년 11월 18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이 국회 소관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7) 법률안 제8조는 국가책임기관을 소관 분야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 8) 법률안 제9조 제1항.
  - 9) 최근 본 법률의 시행령(안)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행령(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 신고 관련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0) 나고야의정서 제6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제3항 제(e)호.  
Article 6. Access to Genetic Resources  
3. Pursuant to paragraph 1 above, each Party requiring prior informed consent shall t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to:  
(위 제1항에 따라, 사전통고승인을 요구하는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를 규정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조항을 고려해야 하는 등<sup>11)</sup> 나고야의정서의 관련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PIC 및 MAT와 관련된 문서에 대해 나고야의정서가 규정하는 사항과(II) 타 법률의 PIC와 유사한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의 양식을 분석하여(III), 법률안의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관련 문서의 종류 및 각 문서의 주요 기재 항목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IV), 향후 하위법령 제정 등 나고야의정서 이행 제도 마련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논하였다(V).

## II. PIC 및 MAT와 관련된 문서에 대해 나고야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

### 1.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

나고야의정서 제6조 제3항 제(e)호는 PIC를 요구하는 각 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치 중 하나로 접근 시점에 PIC 부여 결정과 MAT 체결의 증거로서 허가증이나 그 상응문서를 발급하고, 이를 ABS-CH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급되고 ABS-CH에 공개된 허가증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이하 IRCC)를 구성하게 되며<sup>12)</sup>, IRCC는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적절히 한다.)

- (e) Provide for the issuance at the time of access of a permit or its equivalent as evidence of the decision to grant prior informed consent and of the establishment of mutually agreed terms, and notify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ccordingly;
- (시전통고승인 부여 결정과 상호 합의된 조건 확립의 증거로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시 허가증이나 이에 상응하는 것의 발급 및 적절히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대하여 통보)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sup>11)</sup> 박종원,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환경법연구, 제37권 제1호, 2015, 100면.

<sup>12)</sup> 나고야의정서 제17조 (유전자원의 이용 감시) 제2항.

Article 17. Monitoring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 2. A permit or its equivalent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paragraph 3 (e) and made available to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shall constitute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PIC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ABS 관련 국내법 및 규제 요건이 요구하는 대로 해당 인증서에 적시된 유전자원이 PIC에 따라 접근이 허용되었고 MAT가 확정되었다는 증거 역할을 하게 된다<sup>13)</sup>. 따라서,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은 ABS-CH에 공개된 IRCC를 통해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률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게 되며, IRCC는 유전자원의 이용을 감시하기 위해 관련 국가의 점검기관에서 취합·수집해야 하는 정보 중 하나이다<sup>14)</sup>.

(제6조 제3항 제(e)호에 따라 발급되고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제공된 허가증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를 구성한다).

- <sup>13)</sup> 나고야의정서 제17조 (유전자원의 이용 감시) 제3항.

Article 17. Monitoring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3.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shall serve as evidence that the genetic resource which it covers has been accessed in accordance with prior informed consent and that mutually agreed terms have been established, as required by the domestic access and benefit-sharing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of the Party providing prior informed consent.

(3.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는, 사전통고승인을 제공하는 당사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 입법 또는 규제상 요건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증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전자원이 사전통고승인에 따라 접근되었고 상호 합의된 조건이 확립되었다는 증거 역할을 한다)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 <sup>14)</sup> 나고야의정서 제17조 (유전자원의 이용 감시) 제1항 제(a)호 제(i)목 및 제(iii)목.

Article 17. Monitoring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1. To support compliance, each Party shall take measures, as appropriate, to monitor and to enhance transparency about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Such measures shall include:

(의무준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감시하고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히 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The designation of one or more checkpoints, as follows:

(다음 각 목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점검기관 지정)

(i) Designated checkpoints would collect or receive, as appropriate, relevant information related to prior informed consent, to the source of the genetic resource, to the establishment of mutually agreed terms, and/or to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s appropriate;

(지정된 점검기관은, 적절하게, 사전통고승인, 유전자원의 출처, 상호 합의된 조건의 확립, 그리고/또는 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거나 접수한다).

(ii) Each Party shall, as appropriate and depending on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a designated checkpoint, require users of genetic resources to provide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the above paragraph at a designated checkpoint. Each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measures to address situations of non-compliance;

나고야의정서 제17조 제4항은 기밀 정보가 아닐 경우 IRCC에 포함될 최소한의 정보로 발급기관, 발급일, 제공자, 인증서 고유 확인(identifier), PIC를 획득한 자 또는 기관, 허가 대상 사안이나 유전자원, MAT가 체결되었다는 확인, PIC가 있었다는 확인, 상업적·비상업적 이용 등 9가지를 나열하고 있다. 현재 당사국이 상기 정보를 기재하여 ABS-CH에 통보하는 서식인 IRCC 공통양식(common format)이 개발되어져 있으며<sup>15)</sup>, IRCC 공통양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표 1과 같다.

IRCC 공통양식은 PIC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제도 마련에 있어 IRCC 공통양식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접근 신고 관련 문서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IRCC의 공통양식은 11개의 필수 항목과 12개의 선택 항목 등 총 2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특히, 11개의 필수 항목 중 9개는 나고야의정서 제17조 제4항에서 IRCC에 포함될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으로, 해당 항목이 국내 접근 신고 관련 문서에 포함되어야 국내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IRCC를 발급할 수 있을 것이다. IRCC 공통양식의 필수 항목 중 신규·개정·폐지 여부와 국가명은 나고야의정서 제17조 제4항에서 IRCC에 포함될 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IRCC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특히 법률안 제9조 제3항은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접근 신고 문서에는 신고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필요하다.

---

(각 당사자는, 적절히 그리고 지정된 점검기관의 고유한 특징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자에게 위 제(i)목에 명시된 정보를 지정된 점검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각 당사자는 비준수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하고 실효적이며 비례적인 조치를 한다.)

(iii) Such information, including from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s of compliance where they are available, will, without prejudice to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be provided to relevant national authorities, to the Party providing prior informed consent and to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s appropriate;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이러한 인증서의 내용 등의 정보는, 비밀정보 보호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관련 국내 기관, 사전통고승인을 제공하는 당사자 그리고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적절히 제공된다).

<sup>15)</sup> IRCC의 공통양식(National Recode Type: #ABSCH-IRCC)은 ABS-CH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cbd.int/abs/doc/commonformats/ABSCH-IRCC.doc>)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27일).

## &lt;표 1&gt; IRCC 공통양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

일반정보	MAT 정보	
* 1. 신규 및 개정 · 폐지** 여부	*13. MAT가 체결되었다는 확인	
* 2. 국가명	14. MAT 추가 정보	
3. 관련된 타 IRCC 등록번호**	사안 또는 유전자원	
발급기관	*15. 허가 대상 사안/유전자원(또는 기밀)	
* 4. 허가증에 책임이 있는 국가책임기관**	16. 추가 정보(표본 · 분류 · 지리정보)	
허가증 및 그 상용문서의 상세정보		
* 5. 허가증 참고번호	유전자원 이용 관련 정보	
6. 추가 참고번호 또는 식별자	*18. 상업적 · 비상업적 이용(또는 기밀)	
* 7. 허가증 발급일	19. 특정이용 또는 이용제한 등 추가 정보	
8. 허가증 파기일	20. 제3자 이전 조건	
PIC 정보	문서	
* 9. 제공자** (또는 기밀)	21. 허가증 사본 또는 기타 공개 문서	
*10. PIC 부여 또는 획득의 확인	추가 정보	
11. PIC 추가 정보	22. 추가 정보	
*12. PIC를 획득한 자·기관** (또는 기밀)	23. 자유 서술(ABS-CH에 비공개)	

\* 필수 항목 (1, 2번을 제외한 항목은 나고야의정서 제1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보임)

\*\* 기존 ABS-CH 등록번호의 기재를 요구하는 항목

한편, 나고야의정서 제17조 제4항에서는 나열된 9개 정보 중 어떠한 정보가 기밀 정보인지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IRCC 공통양식에서는 제공자, PIC를 획득한 자 또는 기관, 허가 대상 사안이나 유전자원, 그리고 상업적 · 비상업적 이용 등 4개 항목에 대해 기밀 정보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기업 등 유전자원 이용자의 향후 연구 · 개발, 특히 출원, 상품화 전략 등을 추론해 낼 수 있는 정보로, 공개 시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따라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문서에서도 상기 정보에 대해서는 기밀 정보임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IRCC 공통양식의 항목 중 5개는 기존 ABS-CH 등록번호<sup>16)</sup>를 기재하도록 하고

<sup>16)</sup> ABS-CH 등록번호는 ABS-CH에 등록된 정보의 관리를 위해 각 정보마다 부여되는 유일한 번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국가연락기관인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담당자의 ABS-CH

있다. 이중, IRCC의 개정·폐기 시 기존 IRCC 등록번호, 본 IRCC와 관련된 타 IRCC 등록번호, 그리고 허가증 발급에 책임이 있는 국가책임기관의 등록번호는 기존 ABS-CH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유전자원 제공자와 PIC를 획득한 자 또는 기관의 등록번호는 ABS-CH에 등록된 바가 없어 존재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때 IRCC 공통양식에서는 세부연락처(Contact Details/Organization, 이하 CON) 공통양식에 따라 해당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sup>17)</sup>. CON 공통양식에 포함된 정보는 표 2와 같으며,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서식에서 인적사항과 관련된 항목은 CON 공통양식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CON 공통양식은 크게 기관 정보, 개인 정보, 세부 주소·연락처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기관일 경우 기관 정보와 세부 주소·연락처를(개인 정보는 선택), 개인일 경우 개인 정보와 세부 주소·연락처를(기관 정보는 선택)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CON 공통양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여러 유사 신고 서류와 유사하다. 그러나 특징적으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필수 항목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메일 주소의 경우 IRCC 등 ABS-CH에 공개된 자료를 전자통신망을 통해 이와 관련된 자 및 기관에게 제공해주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문서에도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표 2> CON의 공통양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

A. 기관 정보	C. 세부 주소 및 연락처
1. 기관명	16. 거리명
2. 기관명 약어	17. 도시명
3. 기관 종류(정부, 국제기구, NGO 등)	18. 주/도명
B. 개인 정보	
10. 제목	19. 우편번호
11. 이름(last name)	20. 국가명
12. 중간 이름(middle name)	*21. 전화 번호
13. 성(first name)	22. 팩스 번호
14. 직업	*23. 이메일 주소
15. 부서	24. 웹사이트 주소

\* 필수 항목

등록번호는 ABSCH-NFP-KR-6422이다.

<sup>17)</sup> CON의 공통양식은 ABS-CH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cbd.int/abs/doc/commonformats/ABSCH-CON.doc>) (최종 검색일 2016년 11월 27일).

한편, IRCC 공통양식의 필수 항목 중 PIC 부여 · 획득의 확인과 MAT가 체결되었다는 확인 등 두 개의 항목은 “예(yes)”만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IRCC는 PIC 부여 결정과(and) MAT 체결의 증거로서 당사국이 발급한 허가증이나 그 상응문서<sup>18)</sup>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IRCC에 적시된 유전자원이 PIC에 따라 접근이 허용되었고 (and) MAT가 확정되었다는 증거 역할을 함에 따라<sup>19)</sup>, IRCC는 PIC의 획득과 MAT의 체결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발급되어 진다. 이와 관련하여 IRCC 공통양식의 각주 9는 PIC가 획득되지 않았을 경우 IRCC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sup>20)</sup>, 각주 12 역시 MAT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IRCC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sup>21)</sup>.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안은 MAT 체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 없이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는 경우, IRCC가 발급되지 않는다. 접근 신고 관련 문서에 이익 공유를 위한 서면 합의 없이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한 경우 IRCC가 발급되지 않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의 자발적인 MAT 체결을 유도할 수도 있다.

## 2. 상호합의조건 관련 규정

나고야의정서 몇몇 조항에서는 MAT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제6조 제3항 제(g)호는 PIC를 요구하는 당사국에게 MAT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분쟁 해결 조항,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이익 공유 조건, 제3자 추후이용에 관한 조건, 사용 목적의 변경에 관한 조건 등이 MAT에 포함될 수 있도록

18) 나고야의정서 제6조 (유전자원의 접근) 제3항 제(e)조. (각주 10 참조).

19) 나고야의정서 제17조 (유전자원의 이용 감시) 제3항 (각주 13 참조).

20) IRCC 공통양식 각주 9: “If PIC has not been obtained or granted, this record cannot be posted in the ABS Clearing-House and, therefore,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will not be issued.” (만일 PIC가 획득 또는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 본 기록은 ABS 정보공유체계에 발송되지 않으며, 따라서 IRCC가 발급되지 않는다).

21) IRCC 공통양식 각주 12: “If no mutually agreed terms (MAT) has been established, this record cannot be posted in the ABS Clearing-House and, therefore,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will not be issued.” (만일 상호합의조건(MAT)이 확립되지 않았을 경우, 본 기록은 ABS 정보공유체계에 발송되지 않으며, 따라서 IRCC가 발급되지 않는다).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제18조 제1항은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적용 가능한 법률, 조정 또는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책을 MAT에 포함시키도록 권장하고 있다. 더불어 제17조 제1항 제(b)호는 당사국에게 유전자원의 이용자 및 제공자로 하여금 MAT에 보고 요건을 포함하여 MAT 조건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시키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안은 MAT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MAT의 서면 체결 및 MAT에 포함될 내용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서식에 이의 공유를 위한 서면 합의 여부 및 분쟁 해결 조항 등 상기 나고야의정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합의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을 두어 간접적으로나마 나고야의정서의 관련 조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III. 타 법률의 PIC와 유사한 제도의 신고 서식

나고야의정서의 PIC와 유사한 국내 제도로는 외국인에 의한 생물·생명자원 획득 신고·허가제와 생물·생명자원에 대한 국외반출승인제가 있다. 법률안 제9조 제2항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승인(생물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았거나 동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를 한 경우,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생명자원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허가(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취득 허가)를 받았거나 동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승인(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명자원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를 받았거나 동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승인(해양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접근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 1. 획득 신고 · 허가 관련 서식

외국인 등이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취득 허가 또는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획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 신청서에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up>22)</sup>. 이를 위한 수산생물자원 취득허가 신청서<sup>23)</sup>와 해양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sup>24)</sup>는 서로 기재 항목이 동일하며, 신청인란과 신청내용란, 그리고 공동조사일 경우 기재해야 하는 공동조사자란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신청인란과 공동조사란에는 기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청내용란은 조사사업 명칭, 조사책임자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조사기간, 조사유형(단독, 공동)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수산생물자원 취득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조사계획서<sup>25)</sup>는 신청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사항, 조사 내용에 관한 사항, 조사방법 · 조사인력 및 조사수단에 관한 사항, 설비 및 장비에 관한 사항, 조사해역에 관한 사항, 항해에 관한 사항, 조사 결과의 이용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의 참여에 관한 사항 등 8개 주제에 속하는 세부 항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해양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에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수단, 조사 인력, 조사장비 및 조사설비, 조사해역, 조사선박 및 승선대상 선원, 조사결과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 국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항목은 수산생물자원 취득허가증<sup>26)</sup>과 해양생명자원 획득허가증<sup>27)</sup>도 서로 기재 항목이 동일하며, 허가받은 자 · 기관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선박 관련 사항(종류, 번호, 규격 등), 조사 관련 사항(지역, 기간, 도구) 및 포획 · 채취물의 종류 등이 기재된다.

22) 농수산생명자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23) 농수산생명자원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24) 해양생명자원 조사 · 관리 · 이용 및 기탁등록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별지 제6호 서식,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27호.

25) 농수산생명자원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26) 농수산생명자원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별지 제2호 서식.

27) 해양생명자원 조사 · 관리 · 이용 및 기탁등록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별지 제7호 서식,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27호.

한편, 생물다양성법 제13조 제1항과 관련된 생물자원 획득 신고서<sup>28)</sup>는 신청인란과 신고내용란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수산생물자원 취득허가 신청서와 해양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와 달리 공동조사자란이 없고, 조사계획서 등 첨부 서류도 요구하지 않는다. 신청인란은 상기 취득·획득허가 신청서와 유사하나, 신고내용란은 일반명, 학명, 획득목적(상업용, 연구용, 기타), 획득방법(포획, 채취·굴취, 매입 등), 품명(규격), 수량(단위), 상세 내용, 획득경위·장소 및 시기, 반출국, 이용자(기관), 신고 유효 기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즉, 수산생물자원 취득허가 신청서와 해양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는 조사사업이나 조사책임자 등 관련된 자에 대한 정보를 주로 요구하나, 생물자원 획득 신고서는 획득된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를 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산생물자원 또는 해양생명자원 취득·획득 허가의 경우 선장·선박 등에 대한 항목, 설비 및 장치에 관한 항목, 조사해역·항해에 관한 사항 등 수산자원 및 해양자원의 조사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 2. 국외반출승인 관련 서식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sup>29)</sup>는 신청인란과 국외반출 생물자원 내용란으로 크게 구분되며, 신청인란의 기재 항목은 생물자원 획득 신고서의 신청인란과 동일하다. 생물자원 내용란도 생물자원 획득 신고서의 신고 내용과 유사하나, 획득 신고서와 달리 획득방법과 신고 유효 기간 항목이 없으며, 이용방법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다. 이용방법란은 구비서류인 “생물자원 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생물자원 이용계획서”에 대한 특별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국외반출 승인 시 발급되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sup>30)</sup>의 기재 항목은 승인 신청서의 항목과 동일하나, 허가 유효기간과 승인조건 항목이 추가되어져 있다.

한편, 농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sup>31)</sup>와 해양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sup>32)</sup>

28)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3호 서식.

29)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30)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별지 제2호 서식.

31) 농수산생명자원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지 제10호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

32) 해양생명자원 조사·관리·이용 및 기탁등록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별지 제12호 서식,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27호.

의 기재 항목은 서로 동일하다. 이 두 신청서는 신청인란과 국외반출 개요란, 총 반출 개수 기재란으로 크게 구성되어 지며, 신청인란의 내용은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의 신청인란과 유사하다. 그러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와 달리 국외반출 개요란에는 반출 목적과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반출 신청목록<sup>33)</sup>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외반출 승인 시 발급되는 농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서<sup>34)</sup>와 해양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서<sup>35)</sup>의 양식도 서로 동일하며, 신청인란과 승인내용란으로 구분된다. 신청인란은 승인 신청서의 기재 항목과 동일하며, 승인 내용에는 일련번호, 자원번호, 일반명(학명), 자원명, 반출량 등의 반출 목록과 국외반출 승인조건이 기재된다. 농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와 해양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의 양식은 동일하지만, 농수산생명자원의 경우 조건부 국외반출 승인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해양생명자원의 경우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 신청서에 국외반출승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반출승인 대상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서류, 해양생명자원의 국외반출에 따른 관리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외반출과 관련된 세 종류의 승인 신청서를 비교해 볼 때, 농수산생명자원 및 해양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는 해당 생명자원에 대한 정보를 주로 요구하는 반면,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는 해당 생물자원의 이용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33) 농수산생명자원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는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외반출승인에 대한 권한을 소관 분야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국외반출승인의 세부 기준을 상기 기관의 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 · 국외반출 승인기준 제11조 제1항, 별지 제9-1호 서식(농촌진흥청고시 제2015-31호)의 “국외반출 신청목록”에는 일련번호, 일반명, 학명, 품종명(계통명), 국외 반출량, 반출 국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해양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첨부되는 해양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해양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서에는 일련번호, 자원번호, 일반명(학명), 자원명, 반출량 등이 기재됨에 따라 이러한 항목에 맞추어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4) 농수산생명자원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별지 제12호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

35) 해양생명자원 조사 · 관리 · 이용 및 기탁등록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별지 제13호 서식,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27호.

## IV. 접근 신고 관련 문서의 종류 및 그 서식의 주요 항목 제안

### 1. 접근 신고 관련 문서의 종류

PIC 및 MAT와 관련된 문서에 대해 나고야의정서가 규정하는 사항과 타 법률의 PIC와 유사한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의 양식을 분석한 결과,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와 관련하여 접근 및 이익 공유 신고서(이하 신고서), 접근 및 이용과 공유 계획서(이하 계획서), 그리고 신고필증 등 세 종류의 문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타 법률의 PIC와 유사한 제도의 서식과 유사하게 신고서에는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시 필요한 주요 정보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계획서에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제6조 제3항 제(e)호는 각 당사국이 접근 시점에 PIC 부여 결정과 MAT 체결의 증거로서 허가증이나 그 상응문서를 발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필증의 발급도 필요하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복수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체계에서<sup>36)</sup>,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서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산생물자원 취득 허가 또는 해양생명자원 획득 허가와 같이 국가책임기관의 소관 분야에 따라 특징적인 신고 항목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획서와 신고필증은 국가책임기관의 소관 분야에 따라 그 양식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서와 신고필증의 경우 소관 분야와 관계없이 각 문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만을 제안하였다.

### 2. 접근 및 이익 공유 신고서의 주요 항목

IRCC 공통양식의 필수 항목, CON 공통양식 그리고 PIC와 유사한 제도의 관련

---

<sup>36)</sup> 법률안 제8조.

서식을 바탕으로 신고서 본문의 주요 항목을 신고인과 신고내용으로 구분하였다. 본문 외에는 표제부,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 및 열람일시, 처리기간, 근거 법령, 신고일자, 신고인 및 서명, 신고서 접수자, 계획서를 포함한 첨부서류 목록, 작성방법 등 타 신고서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도 필요하다. 한편, 신고 처리 절차 및 ABS-CH를 통한 IRCC 발급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서에 안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1) 신고인

신고인은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 등의 신청인란과 유사하게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되, IRCC 등이 전자통신망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CON 공통양식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이메일 주소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고인이 ABS-CH 등록번호가 있을 경우 ABS-CH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신고내용

신고내용으로는 주로 IRCC 공통양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신고서 구분, 접근 대상물, 접근 대상물의 제공자, 접근 기간, 유전자원 이용, 기밀 정보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가) 신고서 구분

법률안 제9조 제3항은 신고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IRCC 공통양식에서도 신규, 개정, 폐지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안은 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안이 알려져 있지 않아, 별도의 변경 신고서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하였다. 별도의 변경 신고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신고서의 종류(신규, 변경)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경 시에는, 기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변경의 대상이 되는 신고필증 번호 또는 IRCC의 ABS-CH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 (나) 접근 대상물

접근 대상물 즉, 접근 신고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은 그 목록을 기재하도록 하며, 목록은 농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sup>37)</sup>과 유사하게 일련번호, 생물자원명(일반명, 학명), 품종명(계통명), 유전자원명, 접근량 등의 항목이 필요하다. 특히 국외반출 승인 제도의 경우 생물자원 그 자체가 대상이나, 유전자원 접근 신고는 생물자원에 포함된 유전자원이 대상으로 생물자원명과 유전자원명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신고서에서는 생물자원명과 유전자원명을 따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접근 대상물의 수가 많을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계획서에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 (다) 접근 대상물의 제공자

신고 대상물의 제공자, 즉 해당 유전자원 제공자는 상기 신고인과 동일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 (라) 접근 기간

유전자원 접근 기간과 이용 기간은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의 효력이 미치는 기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법률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이용할 경우에 대한 상세한 신고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하위법령에서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법률안 제9조 제3항에 따른 변경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한 번의 접근 신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전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고서에 접근 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있은 뒤, 연구·개발 등 유전자원 이용 행위가 이루어짐에 따라, 접근 기간과 유전자원의 이용 기간은 다를 수 있어 유전자원 접근 기간을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마) 유전자원 이용

MAT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전자원 이용 목적(상업

<sup>37)</sup>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 제11조 제1항, 별지 제9-1호 서식, 농촌진흥청고시 제2015-31호.

적, 비상업적), 유전자원 이용 기간과 이익 공유를 위한 서면 합의 여부, 즉 MAT 체결 여부로 단순하게 구성하고, 그 밖에 MAT 관련 나고야의정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와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계획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필증은 발급될 수 있으나 IRCC는 발급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자발적인 MAT의 서면 체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바) 기밀 정보 표시

IRCC 공통양식에서는 제공자, PIC를 획득한 자·기관, 허가 대상 사안이나 유전자원, 상업적·비상업적 이용 등 4개 항목을 상세 내용 기재 없이 기밀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밀로 표시할 경우 IRCC에는 기밀 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라고만 표시되어 공개된다. 신고서에서 이들과 관련된 정보는 신고인, 접근 대상물, 접근 대상물의 제공자, 유전자원 이용 중 유전자원 이용 목적이다. 이를 4개의 정보는 접근 신고 사항에 있어 주요한 사항으로 이들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신고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변경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IRCC에서 기밀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관리를 위해 접근 신고 시에는 해당란을 모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는 상기 4개의 항목이 기밀인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기밀로 표시할 경우 IRCC에 기밀 정보로 표시되고,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 2. 접근 및 이익 공유 계획서의 주요 항목

IRCC 공통양식의 선택 항목, CON 공통양식 및 MAT와 관련하여 나고야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 타 관련 신청서의 서식을 바탕으로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이 요구된다.

#### (1) 변경 사유

변경 신고를 할 경우, 하위법령 규정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다.

## (2) 신고인 세부정보

신고인이 기존 ABS-CH에 등록되어져 있지 않는 경우에 신고인의 ABS-CH 등록을 위해 신고인의 세부정보가 필요하며, 이때 CON 공통양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항목을 계획서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 (3) 접근 대상물 세부정보

접근 대상물의 수가 많은 경우 등 필요시 계획서에 접근 대상물을 기재하도록 접근 대상물 목록이 필요하다. 접근 대상물 목록은 신고서의 기재 항목과 동일하게 일련번호, 생물자원명(일반명, 학명), 품종명(계통명), 유전자원명, 접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IRCC 공통양식 항목 16번에 해당하는 표본, 분류, 지리정보와 17번에 해당하는 유전자원 종류(식물, 동물, 미생물 등), 접근 지역(농지, 산림, 해양, 섬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 (4) 접근 기간 및 방법

유전자원의 접근 기간 및 방법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다. 접근 방법과 관련하여 생물자원 획득 신고서에서는 획득 방법으로 포획, 채취·굴취, 매입, 양수, 기증, 기타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 (5) 접근 대상물의 제공자 세부정보

신고인 세부정보와 같이 제공자가 기존 ABS-CH에 등록되어져 있지 않는 경우에 제공자의 ABS-CH 등록을 위해 제공자의 세부정보가 필요하며, 이때 CON 공통양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항목을 계획서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 (6) 유전자원 이용 세부정보

신고서에 기재한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고서에는 유전자원 이용 목적을 단순히 상업적, 비상업적을 표시한

것이라면, 상세한 목적(연구용, 의약품 개발용, 화장품 개발용, 건강식품 개발용 등)을 기술하도록 한다. 또한, IRCC 공통양식 19번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정이용 또는 이용 제한 등의 정보와 IRCC 공통양식 20번과 관련된 제3자 이전 조건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7)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 사항

MAT은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계약서 등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서 자체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의 공유를 위한 서면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나고야의정서에서 MAT와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이 합의서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만을 기재하도록 하여 유전자원 이용자와 제공자의 자발적인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분쟁 해결 조항,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이익 공유 조건, 제3자 추후이용에 관한 조건, 사용 목적의 변경에 관한 조건,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및 적용 가능한 법률, 조정 또는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책, 보고 요건, 그리고 합의 조건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조항 등이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서에 포함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8) 기밀 정보 표시

신고서와 비교하여 계획서에는 상세한 내용이 기재됨에 따라, 계획서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단, 신고인의 세부정보, 접근 대상물의 제공자 세부정보, 접근 대상물 세부정보, 유전자원 이용 세부정보는 IRCC의 발급 등을 위해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이들에 대해 기밀임을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IRCC 발급 등을 위해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신고필증의 주요 항목

접근 시점에 PIC 부여 결정과 MAT 체결의 증거로서 신고필증의 발급은 나고야의 정서 제6조 제3항 제(e)호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접근 신고자가 제공자와 이의 공유를 위한 합의를 하지 않아 IRCC가 발급될 수 없다 하더라도,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자는 PIC를 획득했다는 증거로 신고필증을 요구할 것이다. 신고필증은 국외반 출승인서와 유사하게 크게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정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신고인은 신고서의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신고내용의 주요 항목은 신고서의 항목과 IRCC 공통양식의 필수항목을 위주로 하여 접근 대상물, 접근 대상물의 제공자, 접근 기간, 이의 공유를 위한 서면 합의 여부, 유전자원 이용 목적(상업적, 비상업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신고필증 번호, 신고필증 구분(신규, 변경 여부), 관련 법규, 발급일, 발급 국가명, 발급 기관명도 요구된다. 한편, 신고자가 신고서의 해당 항목에 대해 기밀이라 표시했다 하더라도, 신고필증의 성격상 신고필증에는 기밀 사항도 표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V. 향후 나고야의 정서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 시 고려 사항

### 1. 사전통보승인을 획득한 자

법률안 제9조 제1항은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등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접근 신고자가 PIC를 획득한 자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고서에서도 신고자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경우, 내국인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유전자원에 접근하거나, 국내 협력자, 유통업자 등을 통해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위법령 제정 시 공동 연구자 또는 국내 협력자 등이 해당 외국인을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이에 대한 접근 신고 관련 서류의 기재 항목의 추가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 2. 이의 공유를 위한 서면 합의 여부의 확인

당사국의 유전자원 이용 감시와 관련된 의무준수의 대상, 특히 MAT 체결의 확인은 나고야의정서의 협상과정에서 핵심 쟁점사항 중 하나로, 개도국은 MAT의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가를 국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나고야의정서는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각 당사국의 입법요건에 따라 MAT가 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채택되었다<sup>38)</sup>. 이와 관련, 국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한 MAT 체결 의무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하나<sup>39)</sup>, 유전자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 편이성을 고려하여 법률안은 MAT의 체결을 의무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그 여부만을 신고인 본인이 신고서 또는 계획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신고서 및 계획서의 기재 내용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익 공유를 위한 서면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익 공유를 위한 서면 합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또는 방법은 다음에 논의할 접근 신고의 성격과 관련되며, 향후 하위법령 제정 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 3. 접근 신고의 성격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즉 PIC와 관련하여 법률안에는 신고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 제9조에 따른 신고가 강학상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 하는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sup>40)</sup>.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은 수리(접수)의 의미, 적법한 신고의 효과발생 방식, 적법한 신고에 대한 수리(접수) 거부의 법적 효과, 부적법한 신고임에도 행정청이 수리(접수)한 경우의 법적 효과, 행정청의 신고처리 과정 등에서 의미가 있다<sup>41)</sup>.

<sup>38)</sup> 유전자원 이용 감시와 관련된 의무준수 대상과 관련된 논의는 박원석, 나고야의정서의 협상과정 및 핵심쟁점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13집 제4호, 2011, 617-627면 및 오선영,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에 관한 의무준수 및 점검기관 설치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 제34권 제3호, 2012, 302-307면 참고.

<sup>39)</sup> 박종원, 앞의 논문, 101면.

<sup>40)</sup> 박종원, 앞의 논문, 98면.

<sup>41)</sup>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실익은 박균성, 윤기중,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기준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48권 제4호, 2013, 500-504면 참조.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의 경우, 접근 대상물이 국내 유전자원인지에 대한 확인, 이익 공유를 위한 서면 합의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하다. 특히, 법률안 제9조 제4항은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내국인은 그 유전자원 등의 제공국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접근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 시점에 PIC 부여 결정과 MAT 체결의 증거인 신고필증의 발급 가능성이 있어, 형식적인 요건 외에 실질적인 심사가 수반될 수 있고 그렇다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하위법령 제정 시, 신고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수반할 지의 여부와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 4. 법률안의 신고 제도와 타 법률의 유사 제도간의 관계

법률안 제9조 제2항은 타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접근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시간상으로 보아 국외반출승인은 이미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이 이루어지고 난 후, 국외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써 법률안에 따른 PIC를 획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sup>42)</sup>. 또한, 국외반출승인 제도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의한 획득 신고 제도를 통해 PIC를 획득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관련 부처는 PIC 부여 결정과 MAT 체결의 증거로서 허가증 등을 발급해야 하나, 생물다양성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는 신고필증과 같은 증거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다. 특히, 이들 제도는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와 관련된 규정이 없고, 관련 신청서에도 MAT 체결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국외반출승인 제도와 획득 신고 · 허가 제도를 통해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한 외국인의 경우, IRCC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국외반출승인 제도나 획득 신고 제도에 이익 공유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 등 법률안의 접근 신고 제도와 타 법률의 PIC와 유사한 제도 간의 관계에 대해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 5.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서류

42) 박종원, 앞의 논문, 99면.

본 논문에서는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시 필요한 서류, 즉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PIC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서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달리 법률안 제15조는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절차 즉,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에 따랐음을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점검기관의 지정과 업무, 신고 절차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sup>43)</sup>.

나고야의정서는 점검기관이 PIC, 유전자원의 출처, MAT의 체결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하거나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sup>44)</sup>. 또한,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지정 점검기관에 상기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sup>45)</sup>, IRCC 정보를 포함하여 상기 정보를 ABS-CH에 제공하면<sup>46)</sup> 그 정보가 ABS-CH 통해 공개된다. ABS-CH에 공개된 유전자원 이용 관련 문서를 점검기관 코뮈니케(Checkpoint Communiqué, 이하 CPC)라고 하며, 각 당사국이 ABS-CH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기재하는 서식인 CPC 공통양식이 ABS-CH에 공개되어 있다<sup>47)</sup>. 본 연구에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서식을 분석하기 위해 IRCC의 공통양식을 참고한 것처럼, 향후 하위법령 제정 시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문서의 양식을 정함에 있어 관련 나고야의정서 조항뿐만 아니라 CPC 공통양식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6. (잠정)국가보고서의 고려

나고야의정서 제29조는 각 당사국에게 자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sup>43)</sup> 시행령(안)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의 국가점검기관을 국가책임기관을 포함한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sup>44)</sup> 나고야의정서 제17조 제1항 제(a)호 제(i)목 (각주 14 참조).

<sup>45)</sup> 나고야의정서 제17조 제1항 제(a)호 제(ii)목 (각주 14 참조).

<sup>46)</sup> 나고야의정서 제17조 제1항 제(a)호 제(iii)목 (각주 14 참조).

<sup>47)</sup> CPC의 공통양식(National Recode Type: #ABSCH-CPC)은 ABS-CH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cbd.int/abs/doc/commonformats/ABSCH-CPC.doc>) (최종 검색일 2016년 11월 27일).

to the Nagoya Protocol, 이하 COP-MOP)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1차 COP-MOP에서는 각 당사국들이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잠정국가보고서 (interim national report)를 제3차 COP-MOP 개최일(2018년 하반기)로부터 12개월 전까지 제출할 것과 잠정국가보고서의 양식 등을 결정하였다<sup>48)</sup>. 제출된 잠정국가보고서의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COP-MOP에서 결정될 간격과 양식으로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를 제출하게 된다. 제1차 COP-MOP에서 채택한 잠정국가보고서 양식은 6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이중 39개 항목은 나고야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에 기초한 필수 기재 항목으로, 향후 (잠정)국가보고서의 검토를 통해 각 당사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잠정국가보고서의 필수 항목 중 국가책임기관의 명확하고 투명한 서면 결정 제공 여부 및 유전자원 접근 시 허가증이나 그 상용 문서 발급 제공 여부는 신고필증의 발급을 통해 이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하위법령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신고필증의 주요 항목을 고려하여 신고필증의 발급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잠정국가보고서에서는 정보 공유 관련 조항의 MAT 포함 장려 조치 여부, 분쟁 해결 관련 조항의 MAT 포함 장려 조치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공유를 위한 합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해당 의무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계획서 내에 이의 공유를 위한 합의서 내에 관련 내용의 포함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향후 하위법령 제정 등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 체제 마련 시 (잠정)국가보고서 양식의 검토, 특히 나고야의정서 의무 조항에 근거를 둔 필수 기재 항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7.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역할

ABS와 관련된 정보 공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ABS-CH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있어서의 법적 확실성, 명확성, 투명성에 대한 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역할,

<sup>48)</sup> Decision NP-1/3, *Monitoring and reporting* (Article 29), UNEP/CBD/NP/COP-MOP/DEC/1/3, Oct. 20, 2014. 본 결정문의 배경, 논의과정, 분석 등은 이병희 등, 나고야의정서 이행 및 후속조치연구(1차년도), 국립생물자원관, 2015, 31-44면 참고.

특히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유전자원 이용의 점검 및 의무준수 촉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up>49)</sup>. 더불어 ABS-CH를 통해 잠정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sup>50)</sup>, 나고야의정서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의무준수위원회(Compliance Committee)는 당사국이 ABS-CH에 제출된 국가보고서의 정보와 ABS-CH에 제공한 정보의 완성도(completeness)나 정확성(accuracy)에 대해 사무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검토하게 된다<sup>51)</sup>.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안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를 위한 정보관리센터(이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및 점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ABS에 관한 정보의 취합·관리, 해외 ABS 절차 정보의 조사·관리, ABS-CH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며<sup>52)</sup>, 제9조에 따라 국가책임 기관이 제공한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정보를 취합·관리하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이 제공한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 준수의 신고 정보와 절차 준수 조사·권고 정보를 취합·관리해야 한다<sup>53)</sup>.

이러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ABS 관련 정보의 취합·관리 업무와 ABS-CH로의 정보 제공 업무를 고려할 때,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시 발급된 PIC 부여 결정과 MAT 체결의 증거인 허가증, 즉 신고필증을 바탕으로 IRCC 공통양식에 따라 기재 사항을 작성하여 ABS-CH에 통보하는 업무, 국가점검기관이 유전자원 이용자로

<sup>49)</sup> Decision NP-1/2,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nd information-sharing (Article 14)*, UNEP/CBD/NP/COP-MOP/DEC/1/2, Oct. 20, 2014, 1면. 본 결정문의 배경, 논의과정, 분석 등은 이병희 등, 나고야의정서 이행 및 후속조치연구(1차년도), 국립생물자원관, 2015, 5-26면 참고.

<sup>50)</sup> Decision NP-1/3, 앞의 문서, 1면.

<sup>51)</sup> 의정서 제30조는 나고야의정서 조항들의 준수를 촉진하고 위반 사례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절차 및 제도적 체제를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는 제30조의 이행을 위해 의무준수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 기능 및 절차 등을 결정하였다 (Decision NP-1/4, *Cooperative procedures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promote compliance with the Nagoya Protocol and to address cases of non-compliance*, UNEP/CBD/NP/COP-MOP/ DEC/1/3, Oct. 20, 2014). 본 결정문의 배경, 논의과정, 분석 등은 이병희 등, 나고야의정서 이행 및 후속조치연구(1차년도), 국립생물자원관, 2015, 45-101면 참고.

<sup>52)</sup> 법률안 제17조 제2항.

<sup>53)</sup> 법률안 제17조 제3항.

부터 취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CPC 공통양식에 따라 기재 사항을 작성하여 ABS-CH에 통보하는 업무, (잠정)국가보고서를 ABS-CH에 제출하는 업무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 수행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환경부 등 복수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체계에서 나고야의정서 이행 및 점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ABS 관련 정보의 취합·관리·제공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어야 하며, 법률안 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으로부터의 효율적 정보 제공을 위한 행정적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 VI. 결론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의 챕터으로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가 확고히 강조되고, 생물다양성은 더 이상 인류의 공통 유산(common heritage)이 아니며 생물다양성 보전이 인류의 공통 관심(common concern)임이 인정되었다<sup>54)</sup>. 특히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는 국가가 자신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 국가에 있다고 규정하면서, 유전자원을 국가의 주권적 권리로 인식하고 그 이용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sup>55)</sup>. 그러나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이행 방안은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챕터 후 18년간의 협상 끝에 2010년 나고야의정서를 챕터하면서 마련되었다.

나고야의정서 챕터 이후 ABS 이행은 타 국제 협약 및 국제 문서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6월에 열린 제39차 식량농업기구<sup>56)</sup> 총회에서는 ‘식량농업 유전자원의 ABS 이행을 위한 요소’를 환영(welcome)함으로써<sup>57)</sup> 관련 국제 문서

<sup>54)</sup> Glöwka, L, et al., *A Guide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4, p. 3.

<sup>55)</sup> Greiber, T. et al., *An Explanatory Guide to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2012, p. 6.

<sup>56)</sup>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sup>57)</sup> FAO, *Report of the Conference of FAO, Thirty-ninth Session, C 2015/REP*, Jun. 6-13, 2015, p. 13.

간에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ABS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2015년 6월 19일 제69차 유엔총회의 제96차 본회의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sup>58)</sup>하에서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새로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개발할 것과 그 협상 과정에서 이익 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에 대해 논의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sup>59)</sup>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ABS 문제까지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sup>60)</sup>. 또한,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총회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유엔 회원국이 달성을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결의하면서,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의 증진과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의 증진”을 육상 생태계 보호를 위한 목표의 세부목표로 채택하였다<sup>61)</sup>.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발효로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가 다시 확인되면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가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 매김하게 된 것이다.

2014년 10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제1차 COP-MOP가 강원도 평창에서 열렸으며, 우리나라는 당사국총회의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창의적 모호함 속의 걸작품(a masterpiece in creative ambiguity)”으로 평가받고 있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아 올해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동시 개최되며 나고야의정서의 진전 사항, IRCC 및 CPC 등 ABS-CH 관련 사항, 나고야의정서의

<sup>58)</sup>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0 Dec, 1982.

<sup>59)</sup> Resolution 69/292,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RES/69/292, 6. Jul, 2015.

<sup>60)</sup> 생물다양성협약 제4조는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의 경우 생물다양성협약 규정의 적용 범위를 자국의 관할권 내로 규정하고 있다.

<sup>61)</sup>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Oct. 21, 2015.

유효성 평가 및 점검 등이 논의될 제2차 COP-MOP에는 참관국(observer)의 지위로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sup>62)</sup>. 법률안의 하위법령 제정을 포함하여,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적 확실성, 명확성 그리고 특명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국내 이행 체계 구축을 통해, 나고야의정서의 유효성 평가 및 검토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는 제3차 COP-MOP에서 우리나라를 당사국의 지위로서 전 지구적인 ABS 이행 방안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논문투고일 : 2016. 10. 31. 심사일 : 2016. 11. 13. 게재확정일 : 2016. 11. 23.

---

62) 참관국은 해당 회의에서 표결권을 갖지 못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생물다양성협약 제31조). 그러나 참관국은 해당 회의에서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

## 참고문헌

- 박균성, 윤기중,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기준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48권 제4호, 2013.
- 박원석, “나고야의정서의 협상과정 및 핵심쟁점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13집 제4호, 2011.
- 박종원,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환경법연구」, 제37권 제1호, 2015.
- 오선영,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에 관한 의무준수 및 점검기관 설치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 제34권 제3호, 2012.
- 이병희, 이상준, 김윤정, 박정훈, 송송이, 유진희, 『나고야의정서 이행 및 후속조치연구 (1차년도)』, 국립생물자원관, 2015.
- Glowka, L., F. Burhenne-Guilmin and H. Synge in collaboration with J. A. McNeely and L. Gündling, *A Guide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UCN, 1994.
- Greiber, T., S. P. Moreno, M. Åhrén, J. N. Carrasco, E. C. Kamau, J. C. Medaglia, M. J. Oliva, and F. Perron-Welch in cooperation with N. Ali and C. Williams, *An Explanatory Guide to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IUCN, 2012.

[Abstract]

## A Study on the Declaration for Access to Korean Genetic Resources in Implementing Nagoya Protocol

Lee, Sang-Jun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Nagoya Protocol”) entered into force on 12 October 2014. The Nagoya Protocol requires users of genetic resources to obtai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IC”) of the country providing them and to shar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such resources with the country providing the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Mutually Agreed Terms (“MAT”). To implement the Nagoya Protocol,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bill, “Act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to National Assembly on 15 June 2016. The forms for the declaration documents on Access to Korean genetic resources, however, shall be prescribed by enforcement decree or rule. In this study, information on PIC and MAT regulated by the Nagoya Protocol and forms for the declaration documents prescribed by other Acts were analyzed, and three kinds of declaration documents for access to Korean genetic resources (Declaration, Action Plan, and Certificate) and main items on each documents were suggested. Also, some considerations for establishing further legal system in implementing the Nagoya Protocol were discussed.

**주 제 어**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사전통보승인, 상호합의조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접근 신고

**Key Words** Nagoya Protocol, Genetic Resources,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Prior Informed Consent (PIC), Mutually Agreed Terms (MAT), Act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Declaration for Access.